

[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 약 2년 5개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는 그 즈음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위 D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약국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 합계 약 7천만원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고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요양급여 명목으로 2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359만 4,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

3. 적용 법률조항

-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 1항, 제30조
-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4. 판결요지 - 처벌수위

-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자격증분쟁, 면허대여, 2중개설,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실무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